

석유판매업 [] 변경등록신청서
[] 변 경 신 고 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(신고인)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4일
신청인 (신고인)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	
	상호	전화번호	
	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)		
	소재지		
신청 (신고) 내용	변경내용	[]성명 또는 상호 []대표자 []주된 영업소 소재지 []시설의 소재지 []시설의 규모	
	변경 전		
	변경 후		
	변경사유		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3항·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[]변경등록신청 []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(귀중)
한국석유관리원

첨부서류	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	수수료
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 음

신청서 작성 및 제출 → 접수 →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→ 등록절차 여부 결정 및 결재 → 등록증 작성 → 등록대장 기재 → 등록증 발급

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 석유관리원

신청서 작성 및 제출 → 접수 →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→ 등록절차 여부 결정 및 결재 → 등록증 작성 → 등록대장 기재 → 등록증 발급

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시·도 시·도 한국 석유관리원

신청서 작성 및 제출 → 접수 →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→ 등록자격 여부 결정 및 결재 → 등록증 작성 → 등록대장 기재 → 등록증 발급

신청인 시·군·구 시·군·구 시·군·구 시·군·구 시·군·구

신고서 작성 · 제출 → 접수 →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→ 신고확인증 발급

신고인 시·군·구 시·군·구 시·군·구

년 월 일

양도인	성명 주소	(서명 또는 인)
양수인	성명 주소	(서명 또는 인)